

학교법인 성지학원

[2019학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]

구 분	이사	감사
임원정수	8인	2인
제적이사	8인	2인
참석이사	8인	0인

1. 회의일시: 2019년 8월 29일(목) 11:00~12:10 (소집통지일: 2019년 8월 21일)

2. 회의장소: 부산외대 회의실(F관 603)

3. 임원 출결사항

○ 참석임원: 8인 (이사장 정해린

이사 백성애, 최정락, 정길수, 오지섭, 윤희선, 이복수, 강신도)

○ 배석인원: 2인 (사무국장 서정학, 기획처장 김우성)

4. 안건

○ 제1호 의안: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(안)

○ 제2호 의안: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BUFS2025(안)

○ 제3호 의안: 부산외국어대학교 2018학년도 결산 적립금명세서 수정(안)

○ 제4호 의안: 성지고등학교 교원 징계의결 요구(안)

○ 제5호 의안: 법인 정관 개정(안)

○ 제6호 의안: 직원 재심위원회 규정 개정(안)

○ 제7호 의안: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(안)

○ 제8호 의안(긴급의안): 2019학년도 법인 추경예산 편성(안)

○ 기 타: 간서명 이사 선임

5. 개회선언

11시 정각에 정해린 이사장께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받은 후, 이사회 개최에 대한 임원들의 동의를 받아 2019학년도 제5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.

<이사장의 요청으로 정길수 이사의 기도인도 후 회의가 시작되다>

6. 안건심의

□ 제1호 의안 :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(안)

<간서명>			
-------	---	--	---

1) 이사장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(안)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 김우성 기획처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.

<김우성 기획처장이 회의실에 입실하다>

2) 김우성 기획처장이 배부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임용절차를 거쳐 상정된 부산외국어대학교 전임교원 임용(신규임용, 승진, 정년보장, 재임용, 전보, 휴직, 직종전환, 면직)안에 대해 다음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이사회에 의결을 구하다.

▶ 아래 12명 신규임용(임용계약기간 : 2019.09.01.~2021.08.31.)

연번	직종	소속	성명	생년월일(성별)	직위	비고
1	전임교원B	동남아 창의융합학부				
2	교육중점 전임교원	일본어 창의융합학부				
3		중국어전공				
4		회계전공				
5	산학협력 중점교원	산학협력단				
6		LINC+사업단				
7		LINC+사업단				
8	외국인 전임교원	국제학부				
9		인도학부				
10		포르투갈어전공				
11		스페인어전공				
12		동남아 창의융합학부				

▶ 아래 4명 승진(임용일: 2019.09.01.), 2명 승진탈락, 2명 승진심사 포기

연번	성명	소속	현직위 임용일	현직위	승진 직위	최종 심사결과	사유	비고
1		일본어 창의융합학부	20090901					
2		일본어 창의융합학부	20140901					
3		지중해지역원	20130401					
4		중남미지역원	20130301					
5		영어학부	20130901					
6		국제무역전공	20120301					
7		교직과	20130901					

<간서명>

김우성

Lee Bok-soo

정해린

연번	성명	소속	현직위 임용일	현직위	승진 직위	최종 심사결과	사유	비고
8		교육대학원	20130301					

▶ 아래 2명 정년보장(임용일: 2019.09.01.)

연번	성명	소속	현직위 임용일	현직위	최종 심사결과	사유	비고
1		일본어 창의융합학부	20140901				
2		동남아지역원	20190301				

▶ 아래 2명 재임용, 2명 재임용탈락(재임용 심사유예자 재심의)

직종	성명	소속	현직위	재임용기간	심사결과
교육중점전임교원				'19.09.01.-'21.08.31.	
산학협력중점교원				'19.09.01.-'21.08.31.	
산학협력중점교원				'19.09.01.-'21.08.31.	
외국인전임교원				'19.09.01.-'21.08.31.	

▶ 아래 5명 전보(임용일 : 2019.09.01.)

연번	현소속	발령소속	성명	비고
1	일본어창의융합학부	통역번역대학원(한일전공)		
2	한국어문화학부	국제학부		
3	한국어문화학부	국제학부		
4	한국어문화학부	만오교양대학		
5	한국어문화학부	만오교양대학		

▶ 아래 1명 휴직(휴직임용일 : 2019.09.24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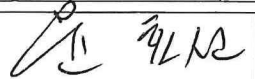
직종	소속	성명	생년월일(성별)	휴직사유
교육중점전임교원				육아휴직

▶ 아래 1명 직종전환(임용일 : 2019.09.01.)

소속	성명	직종	
		변경전	변경후

▶ 아래 13명 면직(면직임용일 : 2019.08.31.)

연번	직종	소속	성명	생년월일(성별)	직위	최초임용일	비고
1	전임교원A						정년퇴직
2	전임교원A						정년퇴직
3	전임교원A						정년퇴직

<간서명>		Lee Bok Soo	정해린
-------	---	-------------	-----

연번	직종	소속	성명	생년월일(성별)	직위	최초임용일	비고
4	전임교원A						의원면직
5	전임교원B						의원면직
6	인문한국교원						의원면직
7	교육중점전임교원						의원면직
8	교육중점전임교원						의원면직
9	교육중점전임교원						재임용탈락
10	산학협력중점교원						정년퇴직
11	산학협력중점교원						의원면직
12	산학협력중점교원						의원면직
13	외국인전임교원						정년퇴직

3) 이복수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, 윤희선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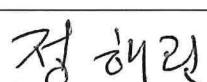
□ 제2호 의안 : 부산외국어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BUFS2025(안)

- 1) 이사장은 부산외국어대학교 2019학년도 중장기발전계획(안)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 기획처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.
- 2) 김우성 기획처장이 배부된 별첨 자료(중장기발전계획 BUFS2025[요약본])와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내외 여건 및 환경변화, 내·외부 환경 분석, 교육목표 및 인재상, 혁신비전 및 중장기 발전 목표,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(5대 부문별 50개의 혁신전략), 대학의 특성화 발전계획, 기존 재정지원사업 성과 유지·확산 방안, 연차별 예산 투입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다.
- 3) 강신도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, 최정락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.
<김우성 기획처장이 회의실에서 퇴실하다.>

□ 제3호 의안 : 부산외국어대학교 2018학년도 결산 적립금명세서 수정(안)

- 1) 이사장은 부산외국어대학교 2018학년도 결산 적립금명세서 수정(안)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.
- 2) 사무국장이 배부된 별첨자료(적립금명세서)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상정된 부산외국어대학교 2018학년도 결산 적립금명세서의 정정 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구하다.

▶ 정정내용 및 사유

<간서명>			
-------	---	--	---

구분	기금구분	전기이월액	당기증가금액	적립재원상세	비고
현행	원리금상환기금	611,857,000원	1,440,085,117원	등록금회계 전입	
정정	위와 동일함			법인전입금, 교육사업수입, 임대료수입	

※사유 : 실제 원리금상환기금의 조성재원은 “법인전입금, 교육사업수입, 임대료수입“이었음에도 ”등록금회계 전입“으로 오기한 것으로 이를 정정하고자 함.

3) 오지섭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, 정길수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.

□ 제4호 의안 : 성지고등학교 교원 징계의결 요구(안)

1) 이사장은 성지고등학교 교원 징계의결 요구(안)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.


2) 사무국장이 배부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제청된 아래 성지고등학교 교원의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구하다.

▶ 아래 주요내용

□ 징계의결요구 대상자

소속	성명	생년월일	직위	제직기간
성지고등학교				

□ 징계의결 요구 사유

<간서명>			
-------	---	--	---

점을 확인한 후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, 최정락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.

□ 제5호 의안 : 법인 정관 개정(안)

- 1) 이사장은 법인 정관 개정(안)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.
- 2) 사무국장이 배부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법인 정관 개정(안)에 대한 주요내용을 다음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이사회 의결을 구하다.

▶ 아래 주요내용

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명 절차 변경

○ 주요내용

-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 의결없이 법인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.

○ 사유

- 인사담당 보직자의 임용, 휴직, 병가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신속하게 위원을 변경하여 징계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.

② 면직 및 징계절차 관련 사립학교법의 주요사항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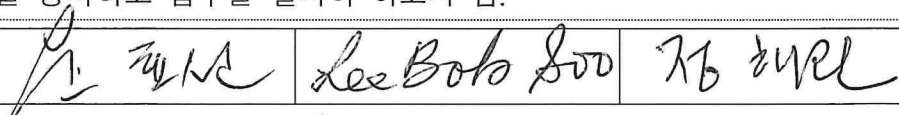
○ 주요내용

- 교원 면직의 사유 “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” 추가
- 징계의 종류 및 보수의 감액을 정함(정직은 2/3, 감봉은 1/3으로 감액)
- 성 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사유의 시효 10년, 징계의결의 기한 30일 이내 추가
- 징계의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(비위 유형, 정도, 근무태도 등)을 추가

○ 사유

- 사립학교법에 있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여 징계 절차상 하자를 방지하고 업무를 철저히 하고자 함.

<간서명>



③ 산학협력단장 자격 조정

- 주요내용
 - 산학협력단장의 자격을 “부교수 이상의 교원”을 “교원(비전임교원 포함)”으로 조정하고자 함.
- 사유
 - 산학협력단장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자 함.

▶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변 경
<p>제50조의4(면직)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.</p> <p>1. - 5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50조의4(면직)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.</p> <p>1. -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</u></p>
<p>제59조(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) ① (생략)</p> <p>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<u>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</u> 다만,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59조(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<u>이사장이 임명한다.</u> 다만,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제59조의2(징계의 사유 및 종류)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<u>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,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이 정관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</u></p> <p>2. <u>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</u></p> <p>3. <u>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</u></p> <p>②징계는 파면·해임·정직·감봉·견책으로 한다.</p> <p>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.</p> <p>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,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.</p> <p>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.</p>

<간서명>			
-------	---	--	---

현행	변경
<p>제62조(징계의결의 기한)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62조(징계의결의 기한)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[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(性)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]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
<p>제63조의3(징계의결의 요구)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<u>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</u>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</p>	<p>제63조의3(징계의결의 요구)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<u>제59조의2 제1항의 징계사유에</u>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</p>
<p>제65조(징계의결) ① (생략)</p> <p>② <u>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65조(징계의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교원징계위원회는 제5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,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(主文)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임용권자가 제3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5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삭제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5조의2(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)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<u>제65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- ③ (생략)</p>	<p>제65조의2(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)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<u>제65조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- ③ (생략)</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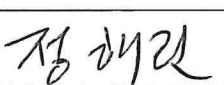
<간서명>		Lee Bob Soo	정해린
-------	---	-------------	-----

현 행	변 경
<p>제66조의3(징계사유의 시효)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</u>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1. -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6조의3(징계사유의 시효)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,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</u>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1. -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2조(하부조직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본부장, <u>처장, 산학협력단장</u>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, <u>안전방재관</u>은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으로, <u>각 사업단 단장, 원장</u>은 교원(비전임교원 포함),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. 단, 본부장, 처장을 교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경력기간 등을 감안하여 <u>조교수 이상의 교원</u>으로 보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92조(하부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본부장, <u>처장</u>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, <u>안전방재관</u>은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으로, <u>산학협력단장, 각 사업단 단장, 원장</u>은 교원(비전임교원 포함), 책임행정관 이상의 직원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. 단, 본부장, 처장을 교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경력기간 등을 감안하여 <u>조교수 이상의 교원</u>으로 보할 수 있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개정 2019. 8. 29.)</p> <p>제1조(시행일) 변경 정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징계의결의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전에 <u>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62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2조 본문에 따른다.</u></p> <p>제3조(징계의결에 관한 경과조치) 제65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<u>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</u></p>

3) 강신도 이사는 이사회 의결 후 정관 변경(안)에 대하여 교육부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·명령 사항의 정관변경(안) 조정은 이사장께 위임하는 것으로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, 윤효선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.

□ 제6호 의안 : 직원재심위원회 규정 개정(안)

1) 이사장은 직원 재심위원회 규정 개정(안)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

<간서명>			
-------	---	--	---

을 설명하게 하다.

- 2) 사무국장이 배부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통지 후 일반직원의 재심신청에 대한 규정 중 재심위원회의 위촉절차 변경에 대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설명하고 이사회 의 결을 구하다.

▶ 아래 주요내용

○ 주요내용

- 직원재심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 의결없이 이사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.

○ 사유

- 외부위원의 위촉과 해촉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위원을 변경하여 재심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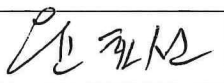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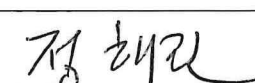
○ 신규대비표

현 행	변 경
<p>제 3 조(재심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 ②재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<u>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.</u> 1. - 5. (생략)</p>	<p>제 3 조(재심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 ②재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<u>이사장이 위촉한다.</u> 1. - 5. (현행과 같음)</p>
	<p><u>부 칙(개정 2019. 8. 29.)</u> <u>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- 3) 윤희선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, 강신도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.

□ 제7호 의안 :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(안)

- 1) 이사장은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(안)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.

<간서명>			
-------	---	--	---

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연임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이사회 의결을 구하다.

- ▶ 아래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내용
 -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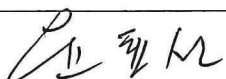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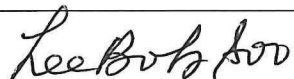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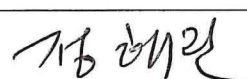
- 성지고등학교 직원징계위원회

- 외부위원의 연임

3) 윤희선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, 강신도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불인 바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.

□ 제8호 의안 : 2019학년도 법인 추경예산 편성(안)

1) 이사장은 2019학년도 법인 추경예산 편성(안)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.

<간서명>			
-------	---	--	---

2) 사무국장이 배부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2019학년도 법인 추경예산(안)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다.

▶ 아래 회계별 예산 요약

(단위:천원)

구 분	1차 추경예산(a)	본예산(b)	증감액(a-b)
수익사업회계(A)	12,619,949	12,566,699	53,250
일반업무회계(B)	13,035,269	1,328,792	11,706,477
내부거래제거(C)	10,446,240	120,000	10,326,240
법인회계(A+B-C)	15,208,978	13,775,491	1,433,48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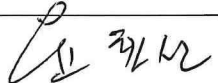


3) 강신도 이사는 위 의안의 승인을 동의하고, 오지섭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 법인회계 추경예산은 15,208,978,000원(수익사업회계 12,619,949,000원, 일반업무회계 13,035,269,000원)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.

□ 기타

- 1)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록의 대표 간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다.
- 2) 강신도 이사는 윤효선 이사, 그리고 이복수 이사를 간서명 임원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하고 오지섭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표결에 붙인 바,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장이 이를 선포하다.
- 3) 아울러 회의록 공개 시 사립학교법 제18조의2, 동법시행령 제8조의2,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 및 법인 주요 경영에 관련되는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정길수 이사 동의와 오지섭 이사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.

7. 폐회선언

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12시 10분에 2019학년도 제5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.


<간서명>			
-------	---	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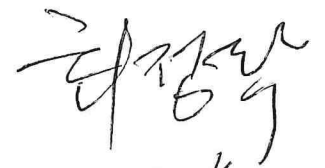
* 후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출석이사 전원 서명 날인하다.

2019년 8월 29일


학교법인 성지학원


이 사 장 정 해 린 

이 사 백 성 애 

이 사 최 정 락 

이 사 정 길 수 

이 사 오 지 섭 

이 사 윤 효 선 

이 사 이 복 수 

이 사 강 신 도 